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 1.

kotra

- 본 책자는 외국인의 국내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KOTRA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법률용어의 엄격한 사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KOTRA 투자종합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137-749)
- 전화 : +82-2-3497-1057
- 팩스 : +82-2-3497-1611
-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



CONTENTS

I.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1
1. 현지법인	2
2. 개인사업자	2
3. 지 점	3
4. 연락사무소	5
II. 현지법인설립절차	6
1. 현지법인설립 흐름도	6
2. 외국인투자신고	6
3.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7
4. 회사설립의 등기: 회사설립등기절차에서 상세히 설명	7
5.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에서 상세히 설명	7
6.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7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8
III. 회사설립등기절차	9
1. 회사설립의 형태	9
2. 주식회사 설립절차	10
3. 주식회사 설립등기	10
4. 창업절차 간소화 및 소규모회사의 특례	15

IV.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17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17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8
V.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19
1. 등록절차 흐름도	19
2. 외국인투자신고	19
3. 투자자금 송금	19
4. 사업자등록	20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20
VI.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절차	21
1. 국내지사 설치 흐름도	21
2. 지사의 구분	21
3. 설치신고	22
4. 지점설치의 등기	22
5.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외국환거래규정 제 9-37조)	24
■ <별 첨> 법인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양식 견본	25

I.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 등임. 단,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는 국내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함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1억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됨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구 분	개인사업자	법 인 (주식회사)
일반적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이윤의 기업주 독점 2. 기업설립이 용이 3. 의사결정의 신속 4. 기업주의 무한 책임 5. 자본조달 능력의 한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조달 및 형성이 용이 2. 설립절차가 복잡 3.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음 4. 투자자본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 5.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적정규모	소규모	중·대규모
법원등기여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등기를 요함
법적출자인원	대표자	발기인 1인 이상
출자금액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함.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 세율이 적용됨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차이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허가기관	KOTRA, KOTRA 해외 투자거점 KBC*, 외국환은행 본·지점(이상 신고기관)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재부(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 건당 1억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법인세율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2억 이하 : 10%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22%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2억 이하 : 10%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22% *지점세 납부의무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 KOTRA 해외투자유치 거점KBC (35개) 현황 (2012.12월 현재)

기능	순번	지역본부	KBC
투자핵심 KBC (연각 1억불 이상 투자국 소재 KBC)	1	북미	뉴욕
	2		실리콘밸리
	3		로스앤젤레스
	4		시카고
	5		토론토
	6	구주	프랑크푸르트
	7		파리
	8		런던
	9	아대양주	싱가포르
	10	일본	도쿄
	11		오사카
	12	중국	홍콩
투자거점 KBC (연각 1억불 미만 투자국 소재 KBC)	1	북미	달라스
	2		워싱턴
	3		디트로이트
	4		밴쿠버
	5	구주	함부르크
	6		뮌헨
	7		스톡홀름
	8		헬싱키
	9		코펜하겐
	10		마드리드
	11		암스텔담
	12		브뤼셀
	13		밀라노
	14		취리히
	15	비인	
	16	아대양주	시드니
	17		멜버른
	18	일본	후쿠오카
	19		나고야
	20	중국	상하이
	21		베이징
	22		타이베이
	23	중동 아프리카	두바이

* KBC: Korea Business Center, 舊 KOTRA 해외무역관

4. 연락사무소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 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 번호증만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음

II. 현지법인설립절차

- 현지법인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됨
즉, ① 외국인투자신고절차, ② 회사설립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③ 사업자등록절차(설립회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임
-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함

1. 현지법인설립 흐름도



2. 외국인투자신고

- (1) 신고인 : 투자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
- (2) 신고장소 : KOTRA, KOTRA 해외투자거점 KBC, 또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권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 (3)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원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별첨 참조)
 - 외국 개인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투자자는 여권사본)
 - 외국 법인투자자의 법인증명서(외국 행정기관, 즉 상무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 (4) 처리기간 : 즉시

3.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1) 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2) 송금계좌

-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투자자금 송금전표 작성 예시

수취은행명 : ○○은행 △△지점
 송금인명 : 투자가명
 수 취 인 : 신설 또는 합작예정 회사명
 자금용도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이라고 명시함

(3) 송금 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회사설립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임

※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신주인수증 등의 공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 요망

4. 회사설립의 등기 : 회사설립등기절차에서 상세히 설명

5.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에서 상세히 설명

6.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회사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됨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망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대부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함
-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통
-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 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짐
 -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 ※ 투자가 사증 신청
 - ① 신청장소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해외 한국 영사관(중국인 제외)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관할 출입국관리소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 ②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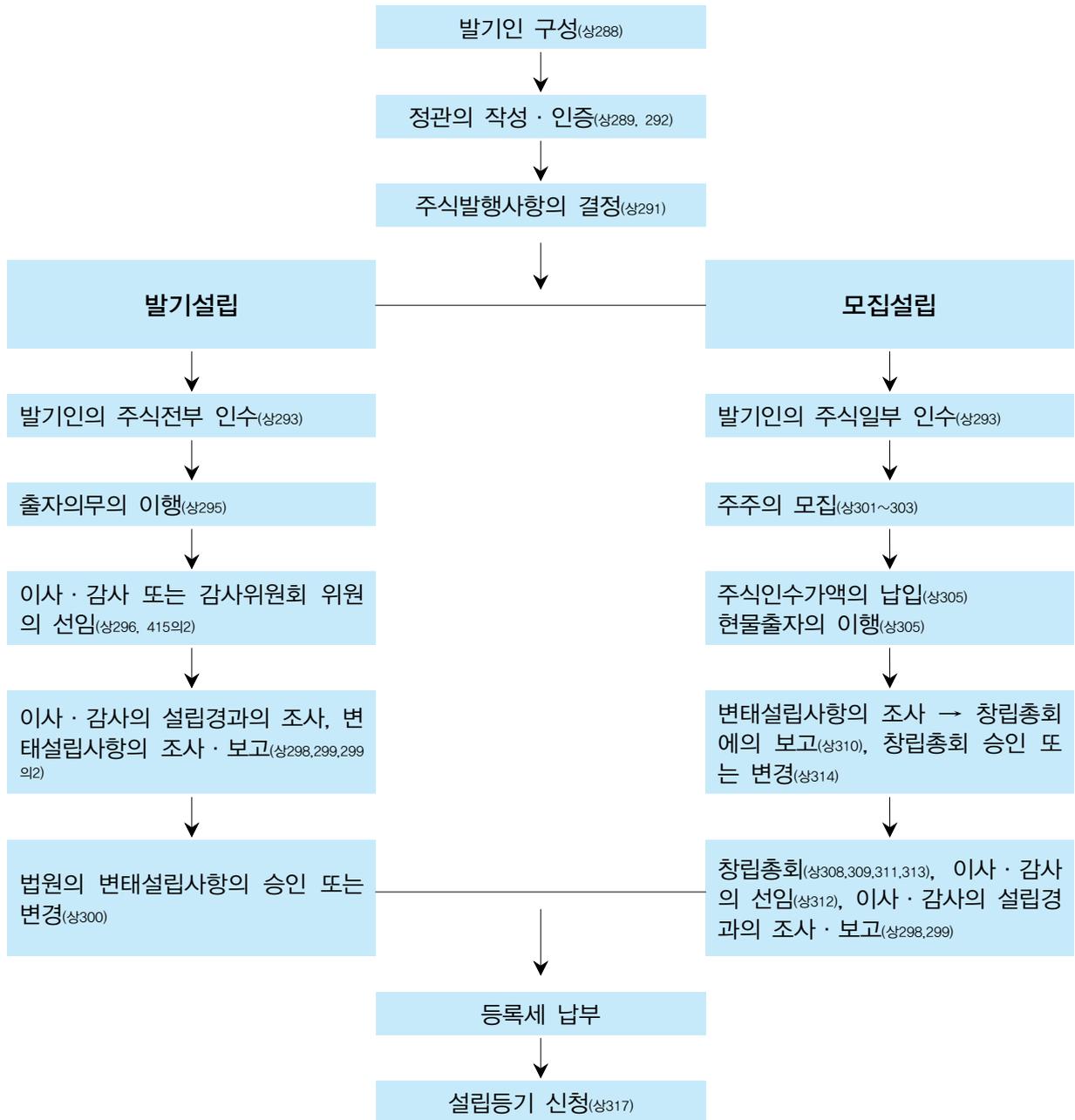
Ⅲ. 회사설립등기절차

-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함
- 회사설립 등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또는 KOTRA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회사설립의 형태

- (1) 모집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
- (2) 발기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주식회사 설립절차



3. 주식회사 설립등기

가. 등기기간

- (1)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2)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나.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1)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상법 제289조), 외국인이나 한국 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음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1주 이상)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됨(상법 제293조)

(2) 동일상호의 사전확인

- 법인 설립 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대법원 웹사이트(www.iros.go.kr) “법인상호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음

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신 청 인 준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8. 이사회 의사록(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16. 취임승낙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② 외국인 :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p>※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p>

※ 각 서류에 대한 견본은 별첨 참조

(2) 투자자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 또는 대만 투자자인 경우는 한국의 법인, 개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함

개인투자자의 준비서류

취임승낙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으로 등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 그 외 국가 : 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으로 사용 ·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그 외 국가 : 거주지에서 공증받은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의 원본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위임장에 인감날인 ·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법인투자자의 준비서류

취임승낙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으로 등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 그 외 국가 : 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으로 사용 ·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그 외 국가 : 거주지에서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의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본법인 :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 통씩 첨부 - 그 외 국가 : 외국투자법인 대표이사가 한국에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임 서명 후 공증, 법인증명서 공증 후 첨부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위임장에 인감날인 ·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 Tips (개인 및 법인투자가 공통사항) |

- 취임승낙서
설립예정인 한국 현지법인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으로서의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취임승낙서(설립될 한국 현지법인의 주소 및 취임하게 될 임원 직위, 서명 혹은 인감날인 등의 요소가 들어감)
- 서명증명서
위임장,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는 사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본인의 여권에 표시된 사인과 동일한 것)
- 주소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에 기입한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증명서로서 임원(대표이사)만 준비함
- 외국인(일본/대만인 제외)은 위임장, 취임승낙서, 서명증명서, 주소증명서를 본국 관공서에서 증명 받거나 본국 공증인에게서 공증 받아야 함(한국에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 즉 이사, 감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자는 본인의 국적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단, 임원으로 취임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 법률사무소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음.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함)
- 위임장
투자가 및 한국 현지법인에 취임하는 임원이 회사설립등기신청인(대표이사 또는 법무 대리인)에게 한국 현지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임장(즉 위임인, 수임인, 위임하는 내용, 서명 혹은 인감날인의 요소가 들어감). 단,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등의 공증 시 공증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 각 1부씩 추가로 필요함.
- 서류에 성명이 기재되는 모든 주주, 임원(외국인 포함)은 도장 및 설립될 한국현지 법인의 인감 준비
- 발지인과 임원은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설립예정인 한국 내 법인의 임원은 내·외국인 상관 없음
- 번역문
등기신청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상등규2③),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면 됨. 다만,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음.

라. 주식회사 설립비용

-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지방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음

회사설립비용 예시

지방등록세 :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 3배 증과됨	1,200,000원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240,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0원
법인인감도장 제작	약 30,000원
공증 시 (정관 등 등기 제출서류 일부)	약 200,000원
합 계	약 1,700,000원

* 자본금 1억원으로 서울시내 설립 가정 (수임료 별도)

KOTRA 법인설립 지원 서비스 순서도

절차순서	수행인	장 소	비 고
1. 상담	담당자	KOTRA 투자종합 상담실	- 법인설립지원신청서 제출
2. 상호검색	담당자	-	- 대법원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검색
3.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청약	신청인	-	-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번역문, 위임장 등 작성
4. 등록세 납부	신청인	관할구(시)청 세무과	- 등록세 신고 및 세액계산서 제출 후 등록세 및 교육세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5. 주금 납입	신청인	외국환은행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농협중앙회	- 외환예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등) - 은행장이 날인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6. 서류 작성	신청인	-	- 등기신청 서류 일체
7. 공증	신청인	공증사무소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3부씩 공증
8. 등기 신청	신청인	관할 등기소	- 관할 등기소에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제출 -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등기는 서류 제출 후 보통 2-3일 후 완료됨

4. 창업절차 간소화 및 소규모회사의 특례

- 2009년 0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소규모회사(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발기설립시 정관에 대한 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주요 내용

- (1)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상법 제292조)
 -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시에 첨부하는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이와 같이 공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소규모 회사의 신속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2)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상법 제363조)
 -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함
 - 이와 같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3)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상법 제368조의4 신설)
 -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함
 -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4)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상법 제4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현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창업 시 드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됨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 사항으로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직접 감독·감시하도록 하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핵심 참고사항

(1) 유사상호등기 규제 폐지

- 종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었으나,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개정됨

(2)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 종전 자본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최저자본금제 폐지
 - ※ 단, 외국인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최저자본금은 한화 1억원 이상임

(3)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

- 정관 공증 면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됨)
- 의사록 공증 면제(공증인법 제66조의2)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

(4)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의 특례

-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허용
- 이사의 수 3명 미만 가능
-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제도 폐지
- 이사가 2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
- 1인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인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함
-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시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경업금지·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신주의 발행결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정, 준비금의 자본 전입, 중간배당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함
- 주주총회소집결정권한, 업무집행결정권(지배인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등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 권한이었으나,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음
- 감사 선임의무 면제
- 감사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 다만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

IV.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함

(1) 신청장소: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관할세무소가 서울시에 한함)

(2) 기 한

-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함

(3) 필요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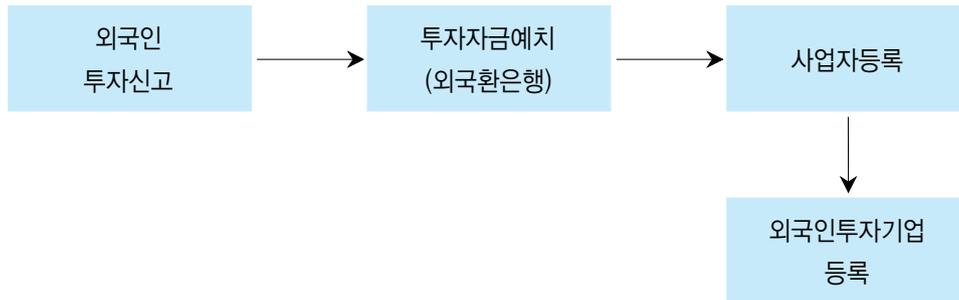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관 사본(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 예를 들어, 은행업, 금융투자 관련업, 방위산업 등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 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9억원, 광역시: 1.5억원, 그 밖의 지역: 1.4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함
- (2)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3)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는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V.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1. 등록절차 흐름도



2. 외국인투자신고

- (1) 신고자: 투자가 또는 대리인
 - ※ 대리인의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공증은 필요없음) 위임장이 필요함
- (2) 신고장소: KOTRA, KOTRA 해외투자거점 KBC 및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 (3) 신고방법: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별첨) 제출
- (4) 신고수리: 즉시

3. 투자자금 송금

- 국내 자금은 허용되지 않음
- 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음(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함)

4. 사업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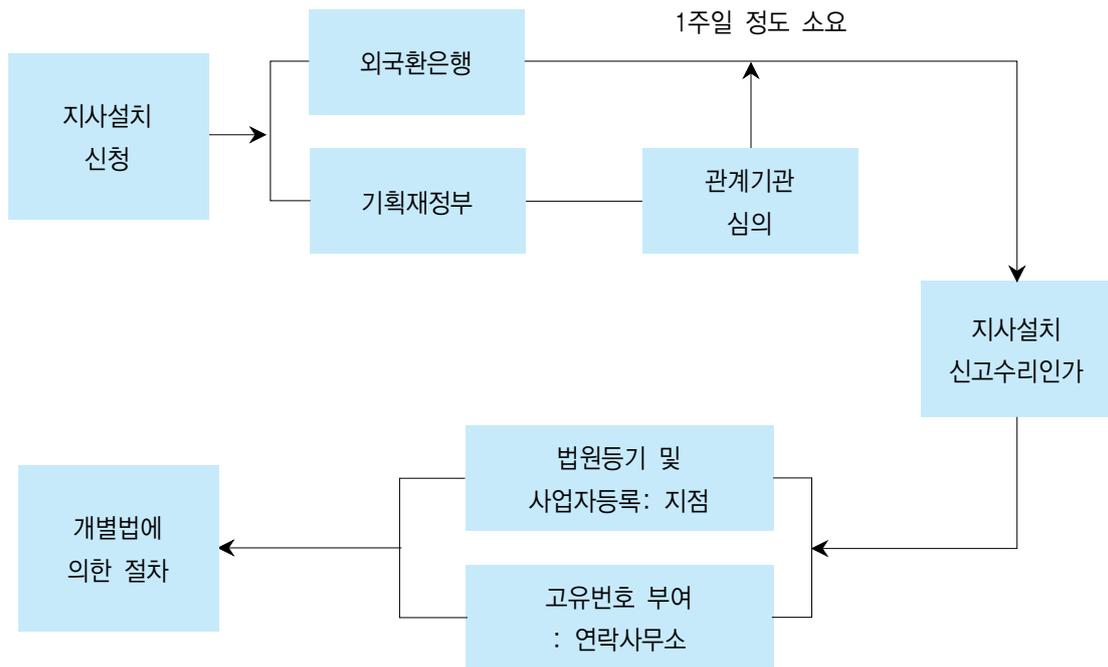
- (1)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서류 제출요망
- (2) 신청장소: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KOTRA(사업장이 서울 소재지)
- (3) 기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4)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KOTRA, 세무서 제공)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 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9억원, 광역시: 1.5억원, 그 밖의 지역: 1.4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 등록장소: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또는 KOTRA
- (2) 등록기한: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VI.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절차

1. 국내지사 설치 흐름도



2. 지사의 구분

가. 지점(branch office)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설치신고

가. 원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나.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사항(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

- (1) 자금의 용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2) 증권 및 보험과 관련된 업무
-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 시 제출서류

-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서식)
- (2) 본사의 정관(양자 모두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법 인: 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한 재무제표
- (3) 국내지사장 임명장 및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4) 지사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5)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 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6) 이사회결의서(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

4. 지점설치의 등기

가. 상법상 개념

- (1)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상법 제614조 - 제 621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2) 등기 실무상으로 외국환관리규정상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가 불필요하고 지점만이 등기절차가 필요함

나. 등기절차

- (1) 등기신청인: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상업 등기법 제111조)
- (2) 등기기간: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3) 등기사항(상법 제614조 제2,3항)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신청서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상호는 한글로 표시하고,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임을 표시
- 본 점: 외국본사의 소재장소
- 영 업 소: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소재 장소
- 등기의 목적: 영업소 설치등기
- 등기의 사유: 영업소의 설치
- 등기할 사항
 -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내국회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 회사의 설립연월일, 영업소를 설치한 뜻과 그 연월일
- 필요한 인(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등록세액 등
- 신청연월일
- 외국회사의 상호, 본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해당 등기소 기재

(5) 첨부서류(상업등기법 제112조)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회사설립사항증명서): 일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미국, 유럽 등 기타 외국의 경우 본국 관청인 상무부, 교부 등에서 발급한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 위 각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5.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외국환거래규정 제 9-37조)

가. 폐쇄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설치신고 한 자에게 제출함

- 신청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규정 서식 제 9-11호)
 - 폐쇄입증서류 (본사 발행)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나. 청산대금 회수

외국기업국내지사를 폐쇄 신고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신청함

- 신청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사무소의 경우에는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납세증명(관할 세무서장 발급) 각 1부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예금잔액증명서 1부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다. 회수대금의 한도

회수대금의 한도 제한은 없고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필한 청산보고서상의 청산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별첨〉 법인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양식 견본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26
2. 정관	29
3. 주식인수증	40
4. 주식청약서	41
5. 주식발행사항동의서	43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44
7.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45
8. 창립사항보고서	46
9. 창립총회의사록	48
10. 이사회이사록	50
11. 조사보고서	51
12. 취임승낙서	52
13. 주주명부	53
14. 위임장	54
15. 법인설립 전 확인사항	55
16. 외국인투자신고서	56
16.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57
18.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58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수	제	호	호	인					

①등 기 의 목 적	주식회사 설립(모집설립)
②등 기 의 사 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2000년 0월 0일 창립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③본/지점 신청구분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등 기 할 사 항	
④상 호	00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00)
⑤본 점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⑥공 고 방 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00일보에 게재한다
⑦1 주 의 금 액	10,000원
⑧발 행 할 주식의 총수	20,000주
⑨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보통주식 5,000주
⑩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등 기 활 사 항	
⑪ 목적	1. 주택건설업 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 토목공사업 1. 부동산 임대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⑫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 ○ ○ (-) 사내이사 ○ ○ ○ (-) 사외이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감 사 ○ ○ ○ (-) ※ 외국인일 경우 : △△국인 ○ ○ ○ (년 월 일생)
⑬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⑭지 점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지점)
⑮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기재)
⑯기 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 을 둔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소재지 등)	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기재)

정 관

제 1장 총 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외식산업
2. 식품제조 및 가공업
3. 의료기기 중개업
4. 부가통신업,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5. 소프트웨어 개발업
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 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당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11조(주식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명의개서 대리인) 당 회사는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 등) ①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증여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

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전 각항의 경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종 청구는 기존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주식의 양도) ①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당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오손 또는 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손 또는 훼손이 심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상실의 예에 따른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코자 할 경우 회사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상실에 대한 제권판결 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무료로 취급하고, 주권의 분함 및 재발행 등으로 인한 주권의 재교부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 채

제20조(사채모집)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②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 ③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3조(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4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 등),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25조(소집시기)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한다.

제26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0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결의) 회의목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이사회

제37조(이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단, 제3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9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0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는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의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의3(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44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8조(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장 감 사

제49조(감사) ① 당 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선)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한다. 단,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직원 경우에 준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7장 계 산

제55조(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잉여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59조(중간배당) 당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제60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8 장 기 타

제61조(업무규정) 당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62조(규정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발기설립(發起設立)의 경우에는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조(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연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

발기인 ○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시 ○○구 ○○동 123-4

발기인 ○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시 ○○구 ○○동 123-5

발기인 ○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시 ○○구 ○○동 123

※ 외국인일 경우 : 발기인 △△국인 ○○○

(년 월 일생)

△△국 ◇◇◇ ××× 123

주식인수증

상 호	○○○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 수	주
총 액	금액 원
1 주 의 금 액	금액 원

본인은 ○○○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발기인 : ○ ○ ○

○○시 ○○구 ○○동 123-4

○○○ 주식회사 귀중

주 식 청 약 서	
상 호	○○○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1 주 의 금 액	금액 원
주 금 총 액	금액 원
<p>위 회사의 정관과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주식 인수를 청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기 년 월 일 주식청약인 ○ ○ ○ ○○시 ○○구 ○○동 123</p> <p>○○○ 주식회사 귀중</p>	
정관의 인증 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서기 년 월 일
목 적	1. 2. 3. 4. 기타 각호 관련 부대사업

상 호	○○○ 주식회사
본점의 소재지	○○시 ○○구 ○○동 12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1주의 금액	금액 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대한민국 ○○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신문에 게재한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 ○ ○ ○ (-) ○○시 ○○구 ○○동 123 발기인 ○ ○ ○ (-) ○○시 ○○구 ○○동 1234 발기인 ○ ○ ○ (-) ○○시 ○○구 ○○동 1235
각 발기인의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발기인 ○○○는 △△주, ○○○는 △△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각각 인수하였다.
주금납입일	년 월 일
주금 납입을 맡을 은행과 납입장소	△△은행 ○○○지점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 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의 금액 금 5,000원
3.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수와 금액
해당사항 없음

년 월 일

발기인 ○ ○ ○

발기인 ○ ○ ○

발기인 ○ ○ ○

○○○ 주식회사 귀중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은 귀 회사 설립시에 발행된 주식 △△ 주 (1주의 금액 : 금 원)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년 월 일 납입이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증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 발기인대표 귀하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아래에 기명날인한 본인들은 ○○○주식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위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창립총회를 상법 제363조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며 이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통지가 적법하게 주어진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시 ○○구 ○○동 123

- 의안: 1. 창립사항보고의 건
 2. 정관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 298조에 정한 사항의 조사보고의 건
 5.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년 월 일

주식인수인 ○ ○ ○

주식인수인 ○ ○ ○

주식인수인 ○ ○ ○

주식인수인 ○ ○ ○

창립사항보고서

본인들은 ○○○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본인들은 사업목적을

- 1)
- 2)
- 3)
- 4)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으로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 1주의 금액은 금 △△원, 자본금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 본인들은 ○ ○ ○씨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설립까지의 필요한 사항에 있어 발기인을 대표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동년 월 일 공증인 변호사에게 인증 받았습니다.

4. 발기인들은 년 월 일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중 △주를 인수하고 잔여 주식 △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의 모집에 착수하였습니다.

5. 위 모집에 앞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액면 1주의 금액을 금△△ 원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년 월 일까지 ○○○씨가 주식 인수를 청약하여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주의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6. 위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는 년 월 일 납입을 맡을 ○○은행 ○○지점에 동년 월 일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동년 월 일 그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주금납입금은 회사의 위 명의로 ○○은행 ○○ 지점에 별단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납입이 확인됩니다.

7.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상법 제 290조에 정한 사항)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아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8. 이사와 같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사의 발기인들인 본인들은 하루속히 회사를 설립시키고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 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발기인 : ○ ○ ○

발기인 : ○ ○ ○

발기인 : ○ ○ ○

○○○ 주식회사

창립총회의사록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년 월 일 오전 시

장소 : ○○시 ○○구 ○○동 123

인수한 주식의 총수 : 주

주식인수인의 총수 : 명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총수 : 명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주식 : 주

발기인 대표 ○○○씨는 위와 같이 상법 제 309조에 정한 정족수가 출석하였으므로 이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임시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 일치로 발기인 대표 ○○○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동인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의안의 심의를 구하였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

발기인 대표 ○○○씨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였다.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임시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에게 그 적합성과 채택 여부를 물은 즉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였다.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임시의장이 이사 2인,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 일치로 다음 사람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출하였다.

이 사 : ○ ○ ○

이 사 : ○ ○ ○

감 사 : ○ ○ ○

동인들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이어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임시의장의 제의에 따라 전원일치로 이사 ○○○씨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동인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제4호 의안 :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의장은 모든 이사와 감사가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설명한 후 발기인이었던 이어나 감사는 그러한 조사에 참가하지 못함을 밝히고 발기인이 아닌 이사 및 감사에게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감사 ○○○씨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하였다.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전원 일치로 승인하였다.

제5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의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그 장소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의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본 점 : ○○시 ○○구 ○○동 123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시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였다.

서기 년 월 일

○○○ 주식회사

의장 이사 : ○ ○ ○

이사 : ○ ○ ○

이사 : ○ ○ ○

이사회 의사록

일 시 : 서기 년 월 일 오전 시 분

장 소 : ○○시 ○○구 ○○동 123 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으므로 상법 제390조 제3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 ○ 명

출석이사수 : ○ 명

감사총수 : ○ 명

출석감사수 : ○ 명

이사 ○○○씨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다.

의 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요구한 바, 출석이사들은 신중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사람을 선임하다.

대표이사 : ○ ○ ○

이상 회의의 목적인 의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서기 년 월 일

○○○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 ○ ○ ○

이 사 : ○ ○ ○

감 사 : ○ ○ ○

조 사 보 고 서

본인들은 년 월 일에 개최된 ○○○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는 바, 이에 상법 제 313조에 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1.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이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 1주의 금액은 금 △△원인 바 그 인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이인수한 주식수 : △△ 주

서기 년 월 일 인수 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수 : △△ 주

서기 년 월 일 인수 완료

2. 인수 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에 대하여 금 △△△원의 납입이 년 월 일 납입완료되었음을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현물출자 및 기타 조사사항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 (상법 제290조에 정한 사항)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경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인 : ○ ○ ○

○○○ 주식회사 귀중

취 임 승 낙 서

아래 기명날인한 본인은 _____ 에 소재한 _____ 주식회사에 _____ 직
으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주 소 :

○○○ 주식회사 귀중

주 주 명 부

상 호 : ○○○ 주식회사

2011년 ○○월 ○○일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	10,0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yahoo.co.kr
○○○	3,000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naver.com
○○○	7,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hanmail.net
총주식수		1주당 금액	자본금
20,000주		금 5,000원	금 100,000,000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1

대표이사: ○ ○ ○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주 소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사람에게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
2.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취임승낙서 등 등기관련서류의 공증행위 일체
3. 기타 위 등기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공증받은 이 서류는 _____부터 _____일까지 유효하다.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주 소 :

법인설립 전 확인사항

※ 법인설립을 위해 아래 사항을 먼저 알려주시어 확정하셔야 합니다.

1. 법인명 :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

2. 법인주소 :

3. 사업목적 : (상호검색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4. 설립자본금 :

5. 1주의 금액 : ₩ 원

6. 공고방법 : 경제신문

7. 결산기일 : 3, 6, 9,12월말 (이중 하나를 고르세요)

8. 이사, 감사, 대표이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9. 주식배당표 : (발기인, 주주의 주식보유수, %, 금액)

투자자 :	:	주	₩	%
투자자 :	:	주	₩	%
투자자 :	:	주	₩	%
투자자 :	:	주	₩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외국투자자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주소(영문)				
	③ 국적				
	SPC여부	[]에 []아니오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상호 국적	
내국투자자	④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외국인 투자기업	⑤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⑥ 자본금(출연금)	취득(출연) 전	취득(출연) 후		
	⑦ 사업등록번호(본사)		SPC여부	[]에 []아니오	
	⑧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	전화번호		
⑨ 하려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분류(신고접수기관 기재란)					
신고내용	⑩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	원(USD	상당), %
	⑪ 투자형태	[]법인설립([]단독, []합작)		⑫ 투자목적	[]공장설립·증설
		[]개인사업([]단독, []합작)			[]사업장설립·증설
		[]유상증자([]내국법인, []외투기업)			[]인수합병
		[]비영리법인출연([]단독, []합작)			[]비영리법인에 출연
	⑬ 투자방법	현금		원 (USD	상당)
		자본재		원 (USD	상당)
		주식		원 (USD	상당)
		부동산		원 (USD	상당)
		채권		원 (USD	상당)
산업재산권 등			원 (USD	상당)	
⑭ 취득할 주식(지 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	1주(좌)당 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⑮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액면가액 :		원	%	
	취득가액 :		원(USD		상당)

[별지 제73호 서식] <개정 2008.3.31>

(앞 쪽)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5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일반	영리외투	비영리	국가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법인 기타	지점(국내사업장) 연락사무소 기타
여	부	여	부	여	부
조합법인 해당여부			공익법인		외국 외투 법인
여	부	해당여부 여	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국적	투자비율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국법인내용					
본점	상호	대표자	설치년월일	소재지	
관리책임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4.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사업(수익사업) 개시일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년월일
사업장 구분 및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m ²	m ²					전화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별소비세		주류면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제조	판매	장소	유통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
						기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시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구분 사업자등록만 신청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_____)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형장소예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 KOTRA 자료 13-002 -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1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3497-1057 (투자종합상담실)
홈페이지 : www.kotra.or.kr/www.investkorea.org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